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고창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(주)씨에이에스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05.25
~
2026.06.30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"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"
• 첨단 정보기술 적용,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,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
• 지방분권, 전국 고른 균형발전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외수입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현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3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
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3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기본법 제135조(지방세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.징수.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개인정보파일 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결손관리</td><td>397,499 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성별,자산정보, 납세정보, 행정처분정보, 신용정보</td><td>-</td><td>결손관리</td></tr>
<tr><td>납세자관리_대행신고납부자관리</td><td>1,253 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</td><td>-</td><td>납세자관리_대행신고납부자관리</td></tr>
<tr><td>농업소득세</td><td>412 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주민등록번호</td><td>-</td><td>농업소득세부과관리</td></tr>
</table>

	담배소비세 관리	57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관세청 (유니패스)	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
	도축세	46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-	도축세부과관리
	등록면허세 관리	39,112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
	등록면허세 관리	79,011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취득세/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
	등록세 관리	78,013 건	이름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등록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
	법원경매	397,491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신용정보원, 법무부	법원경매
	사업 소세관리	583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-	사업소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
	세무조사	1,421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세무조사 관리
	압류관리	399,501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대법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매출채권시스템(여신금융협회) 서민금융진흥원	압류관리
	자동차세	41,905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장애정보	-	자동차세부과관리
	재산세관리	77,526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자산정보	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	재산세 과세대장(토지.건물대장)
	종합토지세	58,129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-	종합토지세부과관리
	주민세관리	32,762 건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	대한적십지사	주민세 과세자료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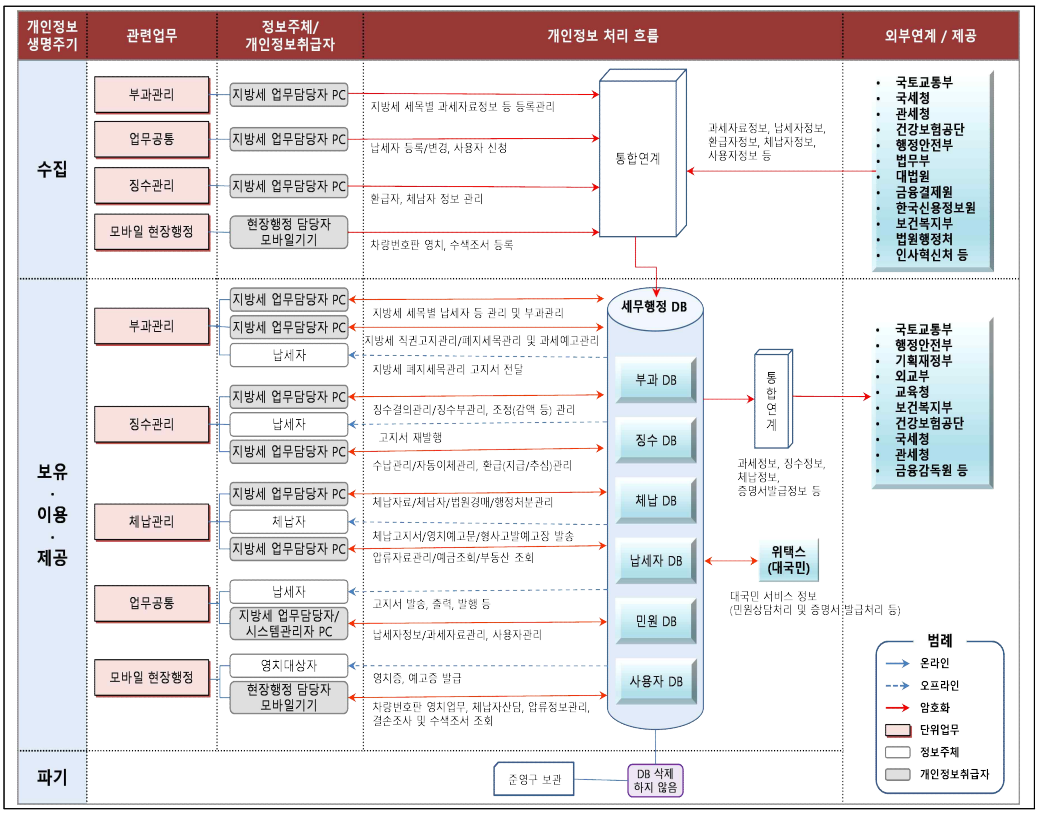
			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		
	주행세	82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-	주행세부과관리
	지방세감액 관리	27,111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우정사업본부	지방세 감액
	지방세고지 서관리	120,852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정보	우정사업본부	고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관리
	지방세공매 관리	397,356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공매물건,공매가액	한국자산관리공 사 한국신용정보원 법무부	자동차세 과세를 위한 대상자 관리
	지방세 과오납관리	62,152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
	지방세 납세자관리	391,246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납세자 정보관리
	지방세 반송관리	612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우정사업본부	고지서반송관리
	지방세 분납관리	12,410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고액납세자 분납처리 관리
	지방세 수납관리	283,001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지방재정관리시 스템 (e-호조) 금융결제원	지방세 수납관리
	지방세자동 이체관리	20,962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	지방재정관리시 스템 (e-호조) 금융결제원	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
	지방세자동 차영치관리	397,346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차량번호, 영치장소, 영치일자, 반환일자	-	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
	지방세전자 수납관리	39,025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	지방재정관리시 스템 (e-호조) 금융결제원	전자수납 내역관리
	지방세 제증명관리	170,812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
	지방세징수 유예관리	712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자산정보, 납세정보	우정사업본부	징수유예관리
	지방소득세 관리	14,958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자산정보	-	지방소득세 부과관리
	지역개발세	15 건	이름, 주민등록번호	-	지역개발세부과관리
	체납관리	398,652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새올행정정보 /e-하나로민원/e 호조 법무부 국토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	체납관리
	취득세	77,605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	국토교통부	취득세 과세를 위한

			E-Mail, 주민등록번호	관세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농림축산식품부	부과관리
	텔레뱅킹 관리	132,478 건	계좌번호, 예금주, 은행명, 장애정보	-	텔레뱅킹관리수납관리
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

1. 개인정보 처리 흐름
 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환급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
 - 고창군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
 -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

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

영향평가기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" 에서 제시한 "자치단체 점검내용"을 포함하여 평가함. 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의 13개 항목 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16개 항목

		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
	주요 평가기준	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 보호법령"을 반영 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을 반영 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 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
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	**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** 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『지방세법』제49조, 제130조,『지방세기본법』제135조,『지방세기본법』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**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** 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 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-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
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-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 수정 (1.2.3) :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 계획 보완 - 개인정보처리 방침 제1조 개정 (3.1.9) :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- 개인정보파일 수정 등록 (3.2.1) :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현행화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해당없음
평가결과		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'해당없음'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 이행, 1개 항목 부문이행으로 평가되었음. 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의 항목 모두 이행으로 평가되었음. 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 항을 이행, 2개 항목 부문이행으로 평가되었음. -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,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작성·관리,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관련 등에 대하여『개인정보 보호지침』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. 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3개 항목 모두 적절하게 **이행**하고 있음. 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

	•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,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.